

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9.02.11(월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하창훈, 사무관 박재웅 • ☎ (044) 201-3413
	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팀장 배병관, 사무관 채원혁 • ☎ (044) 215-2851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거래금액 9억 이상 주택 중개보수 한도 조정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

- 거래금액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의 중개보수 한도를 0.9%에서 0.5%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.
-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0.9%의 범위 내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, 서울시 조례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.

<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'별표1 - 중개보수 한도' >

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
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0,000원
	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0,000원
	2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6억원 이상 9억원 미만	1천분의 5	-
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0,000원
	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0,000원
	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천분의 3	-
	3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

- ※비고 1.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.
 2.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·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.
 가.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
 (1) 9억원 이상인 매매·교환인 경우 :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
 (2)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 :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
 나.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·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

□ 향후, 정부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(상한요율)가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,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노컷뉴스, 2.11(월)) >

- ◆ 부동산복비 4년여 만에 개편 추진.. '9억 이상' 요율 낮출 듯
- 기재부 고위관계자 “시장변화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필요.. 국토부와 협의중”
- 9억원 이상 매매시 '최대 0.9%' → '최대 0.5%'로 하향조정 유력검토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박재웅사무관(☎ 044-201-34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